
KB캐피탈과의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인한 세금 안내

(외국인용-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 제외)

※ 본 내용은 기존 KB금융지주의 주주님과는 무관하며 당사와 KB캐피탈과의 주식교환을 통해 새로 KB금융지주의 주주가 되실 분들에게만 해당됩니다.

I. 포괄적 주식교환에 응하는 경우

1.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과세

- (1) KB 캐피탈 주식과 KB 금융지주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
- (2)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산정함. 비거주자의 양도가액은 수령하는 KB 금융지주 주식의 1 주당 48,676 원이며, 외국법인의 양도가액은 수령하는 KB 금융지주 주식의 1 주당 주식교환일의 종가임.
- (3) 양도가액의 11%(지방소득세 포함)와 양도차익의 22%(지방소득세 포함) 중 적은 금액(양도차익의 22%는 취득가액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이 한국 내에서 소득세(비거주자 개인의 경우) 및 법인세(외국법인의 경우)로 원천징수됨. 다만, 한국 내에서 과세를 면제하고 있는 조세조약을 한국과 체결하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당해 조세조약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 과세가 면제될 수 있음.
- (4) 한국 내에서 소득세나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게 주식양도소득을 포함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을 할 때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 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해야 함.

- 1) 국내 소재 상임대리인(Custodian Bank)을 통해서 본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KB 금융지주가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함. 다만, 실무상 상임대리인과 협의하여 상임대리인이 원천징수를 이행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음.

2) 만약 주주님께서 증권사(금융투자업자)를 통해서 본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수도 있음.

(5) 조세조약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 면제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은 원천징수의무자(KB 금융지주, 상임대리인 등)에게 비과세 면제신청서(거주자증명서 첨부)를 소득지급 전까지 제출해야 함.

2. 주식양도가액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

(1) KB 캐피탈 주식과 KB 금융지주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는 양도가액의 0.5%의 세율로 증권거래세가 부과됨. 주당 양도가액이란 한국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을 말함.

(2) 국내 소재 상임대리인(Custodian Bank)을 통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KB 금융지주가 증권거래세를 거래징수(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할 예정임.

(3) 만약 증권사(금융투자업자)를 통해서 본 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가 거래징수(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음.

II. 유의사항

1. 구체적인 과세관계는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받길 바람.

2. 주주님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관련 사항에 대한 상담 및 안내를 진행할 예정인바, 세무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02)3475-3745(KB 캐피탈 재무기획부)로 문의 바람.